

상주 무양 태왕아너스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특별공급 없이 일반공급만 진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조합원분을 136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135세대에 대한 모집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8.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인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전매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금을 모두 완납 후 규정에 따라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상주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8.29.) 현재 상주시에서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상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angju-honors.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5.28.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일 정	09월 03일(화)	09월 04일(수)	09월 10일(화)	09월 11일(수) ~ 09월 20일(금)	09월 23일(월) ~ 09월 25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10:00 ~ 17:00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일반공급)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주택홍보관 방문접수 - 구비서류 등 지참 후 방문 <p>※ 접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접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p>	당사 주택홍보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정(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시 건축과 - 36654호 (2019. 8. 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138번지 외 21필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20층 4개동 총 271세대 중 일반공급 1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 차로 및 진입로의 높이 : 2.7M
- 대지면적 : 12,052㎡
- 입주시기 : **2021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수)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 세대수	조합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우선 배정세대수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면적							
민영주택	2019000796-01	59.9216	59	59.9216	18.8213	78.7429	21.8786	100.6215	32.1797	33	19	14	1
	2019000796-02	84.9875A	84A	84.9875	24.4958	109.4833	31.0307	140.5140	45.6409	133	82	51	7
	2019000796-03	84.9590B	84B	84.9590	25.2947	110.2537	31.0204	141.2741	45.6256	102	35	67	7
	2019000796-04	123.3825	123	123.3825	39.8767	163.2592	45.0496	208.3088	66.2602	3	-	3	-
	합 계										271	136	135

- ※ 주택규모 표기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상기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면적은 소수점 4자리 이하에 대해 버림처리 되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거나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주택홍보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원)

주택형 (㎡)	동 호 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1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19.12.19	20.04.19	20.08.19	20.12.19	21.03.19	21.06.19	입주지정일	
59.9216	102동 6호, 103동 4호	14	4층	1	34,714,945	170,285,055	-	205,0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61,500,000
			5~12층	5	34,714,945	175,285,055	-	210,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21,000,000	63,000,000
			13~18층	6	34,714,945	180,285,055	-	215,0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64,500,000
			19층	1	34,714,945	185,285,055	-	220,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22,000,000	66,000,000
			20층	1	34,714,945	189,285,055	-	224,0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67,200,000
84.9875A	101동 1,2,3호, 102동 1,2,3호, 103동 1호, 104동 1,3호	51	2층	1	49,236,673	225,763,327	-	275,0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27,500,000	82,500,000
			3층	5	49,236,673	229,763,327	-	279,0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27,900,000	83,700,000
			4층	5	49,236,673	234,763,327	-	284,0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85,200,000
			5~12층	37	49,236,673	243,763,327	-	293,0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87,900,000
			13~18층	2	49,236,673	248,763,327	-	298,0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89,400,000
			19층	1	49,236,673	255,763,327	-	305,0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91,500,000
84.9590B	101동 4,5호, 102동 4,5호, 103동 2,3호, 104동 2호	67	2층	2	49,220,167	227,779,833	-	277,0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83,100,000
			3층	5	49,220,167	231,779,833	-	281,0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84,300,000
			4층	7	49,220,167	236,779,833	-	286,0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85,800,000
			5~12층	38	49,220,167	245,779,833	-	295,0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29,500,000	88,500,000
			13~18층	13	49,220,167	250,779,833	-	30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90,000,000
			19층	1	49,220,167	257,779,833	-	307,0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92,100,000
20층	1	49,220,167	263,779,833	-	313,0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93,900,000			
123.3825	102동 4호, 103동 2,3호	3	17~18층	3	71,480,444	344,108,687	34,410,869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9216	084.9875A	084.9590B	123.3825
약식표기 주택형	59	84A	84B	123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홍보관 및 카달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품목 : 천장형 에어컨)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추가 유상옵션 품목의 계약은 분양 계약 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주택법」 개정 제57조(2016.08.1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매출 총금액을 기준으로 총액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 본 사업부지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각각의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대지면적을 분할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세대 당 대지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으며, 세대 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적정리와 대지면적 확정 및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발송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발코니, 추가선택품목 등의 잔금포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불가)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4자리 이하에 대해 버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음.
- 미성년자는 청약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 가능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2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 2
 -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전산관리(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되며, 향후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주택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신청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8.29.)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상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상주시 및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상주시 및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상주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가능(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종전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 10. 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상주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
		85㎡초과	추첨제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추첨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추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상주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관련)

구분	상주시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기타광역시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19.09.03(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9.09.04(수) 08:00~17:3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준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p>[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p>본인 신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추첨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상주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주택홍보관)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19.09.10.(화)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9.09.23.(월)~2019.09.25.(수) (10:00~16:00) • 장소 - 당사 주택홍보관 (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202-4번지)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주택홍보관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시행하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sangju-honors.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손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09.10. (화) ~ 2019.09.19. (목)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19.09.10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09.23.(월) ~ 2019.09.25.(수) 3일간, 10:00 ~ 16:00	상주 무양 태왕아너스 홍보관 (주소 : 경북 상주시 무양동 202-4번지)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 '계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주민등록표등본(모두표기발급,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 주민등록표초본(모두표기발급)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대리 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상기사유 외 위임장(당사 주택홍보관 비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경상북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8.2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 제출하여야 함)

※ 계약금은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①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또한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 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점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및 당점사실을 포함함.

②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점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③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④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⑤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신청인에게 귀속됨.

⑥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⑦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 없음)

⑧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⑨ 주택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사업주체 (시공사포함)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⑩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⑪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주택홍보관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주택홍보관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함) [입금자 표기 표기의 예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 계좌	국민은행	009937-04-02260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분양수입금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한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

■ 중도금 대출안내

-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은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부담(납부)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용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에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개인 신용 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무이자조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간,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1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으로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VI 추가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부가세포함)

주택형(m ²)	확장비용	계약금	잔금	확장위치
		계약시	입주지정일	
59	9,900,000	2,000,000	7,900,000	거실, 침실2, 침실3, 주방, 드레스룸(침실1)
84A	13,200,000	2,000,000	11,200,000	거실, 침실2, 침실3, 주방, 알파룸, 드레스룸(침실1)
84B	13,200,000	2,000,000	11,200,000	거실, 침실2, 침실3, 주방
123	22,000,000	2,000,000	20,000,00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가족실, 주방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주택홍보관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주택홍보관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잔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확장	국민은행	009937-04-02260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 홍길동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02.18. 개정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일정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은 주택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주택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주택홍보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설치면적, 외부 개구부 루버크기 및 세대 당 전력조건에 따라 실외기는 최대 2개 이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냉매매립배관의 수만큼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에어컨 설치 시 에어컨 전문업체 사전협의 후 에어컨 구매 및 설치에 주의 요함)

■ 유상옵션품목

- 에어컨 옵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냉방전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구분		금액	비고
59	선택1	거실+침실1	3,300,000	• 제조사 : LG전자 • 모델명, 계약일정 및 장소 추후공지(계약시 확인필요)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400,000	
84A	선택1	거실+침실	3,50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00,000	
84B	선택1	거실+침실1	3,50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00,000	
123	선택1	거실+침실1	3,500,000	
	선택2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가족실	8,800,000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단, 추가선택 품목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으로 계약할 경우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시공되지 않음)

(2)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함.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단, 추가선택 품목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으로 계약할 경우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시공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확장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유상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선택1, 선택2)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제품은 관계사의 도산, 품질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등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에어컨 옵션	국민은행	009937-04-022614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Ⅶ 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재 수준 (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구,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기본선택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 할 수 있음

구분	기본선택품목	기본선택품목 제외 시 제공품목
문	목재문(문틀,문짝,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	바닥재(마루판,현관타일바닥,현관디딤판 등 일체),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슈트 및 벽패널류 등),가변형벽체, 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벽체도장,신발장,화장대(상판및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포함),반침장,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벽지류),반자동림(몰딩),우물천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욕실	천장,타일(바닥, 벽),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샤워수전 및헤드 수전등),샤워부스,욕실악세서리일체,욕실장,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욕실환풍기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및악세서리포함),벽타일,설비수전류,렌지후드, 가스쿡탑,주방액정TV,전동빨래건조대,오븐	소방검사 관련 후드,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욕실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 기본 선택품목 산출금액

(단위 : m²,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m ²) (주거전용 면적기준)	59	84A	84B	123
금 액	19,488,000	26,677,000	26,865,000	40,578,000

- ※ 상기 기본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 됨.
- ※ 기본 선택품목 제외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기본 선택품목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기본선택품목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

- ※ 기본 선택품목은 계약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계약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기본 선택품목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 기본 선택품목 제외 시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 기본 선택품목 제외하고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 기본 선택품목 제외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기본 선택품목 제외 시 개별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 기본 선택품목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제외를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제외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기본 선택품목 제외 시 품목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감안하여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공지할 계획임
- ※ 기본 선택품목의 공사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시공하여야 함
- ※ 기본 선택품목을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기본 선택품목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청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 기본 선택품목 개별 시공시 기 시공된 소방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 ※ 기본 선택품목 개별 시공시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 기본 선택품목 개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VIII	유의사항
-------------	-------------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함.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 (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주시,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미세먼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상호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아파트 분양계약서 내용 및 기타 입주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시공상의 구조 및 성능,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아니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미분양 세대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 유통화, 임대, 기관 등에 매각할 수 있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내도로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현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주택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홍보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주택홍보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홍보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주택홍보관 단위세대 내부에 연출용 전사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홍보관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 선택품목 제외로 인한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또한 기본 선택품목 제외 선택시 미시공 품목이나 시공 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주택홍보관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따라서 계약 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오며,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 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단지 내 조성예정인 부대복리시설은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며, 입주 후 입주민의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운영 함.(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에 따라 수용인원, 대상자격, 시간, 장소 등을 세대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민은 시공사에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오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계약전 주택홍보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당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될 수 있으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하여 인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함.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전단, 리플렛, 약식간지, 공급안내, 카다록 등) 및 분양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주택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물 모형의 외관, 외부색채, 창호 및 유리색채,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홍보관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주택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행사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다음과 같은 단지 외부여건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시설물,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을 당 아파트와 비교하여 주택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시설물,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추후 당 사업지의 인접단지 및 구조물들의 설치로 인해 해당세대의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단지내 상가 입점 점포 및 단지 인근 상업구역에서 소음, 냄새 등이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지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의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시 조정 될 수 있으며, 제반 기반시설의 개발계획은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고 그 진행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음.
- 계약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전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본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카탈로그, 단지 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으로 표현하였음)
- 단지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다음과 같은 단지 내부여건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확인하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카다로그 및 모형도,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는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와 및 건물 현황을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전기공급을 위한 단지 내 Pad Switch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한국전력공사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카다로그 및 모형도,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투시도에 표현된 저층부 마감은 석재 및 페인트 혼합으로 디자인 되었음.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출입구 등은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 통제제한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동호는 동간거리, 층수 및 방향에 따라 일조, 조망 등에 제한이 있으며, 청약 및 수분양자는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음
-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의 배치도 상에 표현된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경비실 인접 세대는 각 시설물의 에어컨 실외기, 설비시설 및

쓰레기 수거시설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 분진에 의한 생활 침해 받을 수 있음.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함
- 공동주택 측벽(외벽) 로고의 설치여부, 위치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에 의한 민원으로 변경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수공간 등),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주택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Utility 공급시설(배관, 배선)이 노출 시공됨.
- 근린생활시설은 추후분양예정에 따른 MD 계획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MD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이 될 소지가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차 접근 및 에어매트 설치구간 확보를 위해 동 전면의 일부 녹지구간에는 교목식재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도시가스는 단지내 매립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며,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입면, 벽체 마감, 외부 색채, 간판 위치, 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과정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외부 색채, 입면, 옥외시설물 등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입주자 동의없이 조정 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냄새,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건축 및 증축으로 인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헬스, 담장 또는 조경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경계선은 확정 측량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 주민공동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 될 수 있음. (운동기구 등을 포함한 내부집기를 추가적으로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됨.
-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실 등) 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서 지정한 일자(입주자사전방문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 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향후 예비 소음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
- 계약자는 부지내 우오수 배수를 위해 시공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영구 점용료 발생시 납부 의무가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 (평면 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 별로 상이함.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람,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홍보관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 할 수 있음.
-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고 단지 주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함.
-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와 욕실의 천장높이는 실시공사 바닥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으로 인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건축물 구조상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한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2.7m로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음.
- 펠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는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 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영구배수 설계로 지하주차장 및 코아부위에 펌프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전기세가 발생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외기실 장비 등에 따라 실외기실 도어 사이즈 개폐방향은 주택홍보관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의 집기류(마감자재 포함)의 경우 분양 홍보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임.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에 설치되는 웬 및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음이 발생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고, 각종 장비 및 승강기의 작동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본 선택품목 제외 시공으로 인한 발코니 비확장시 상부 확장세대로 인하여 수전 및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 시 확인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창호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대피공간, 비확장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발코니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을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함)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제연팬룸, D/A)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홍보관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안하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 가구 및 수납 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동별, 층별 또는 세대별로 일조, 통풍, 소음, 조망, 콘크리트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는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 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 5항에 의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 될 수 있음.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지하부 주차구획은 기동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도어는 사이즈 및 개폐 방향이 변경 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 설치 시공시 배관 및 장비가 노출되거나, 내부 마감 (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각종 시스템의 연동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 및 ARS 서비스 이용 등은 별도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본 공동주택에 적용된 홈네트워크, 승강기 등의 제어용 서버(server)는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본 사업지 내에 설치되는 CCTV모니터(DVR용)는 1년간 품질을 보증함.
- 세대별 무선AP는 기간사업자로부터 인터넷 가입후 가능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 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 될 수 있음.
- 주택홍보관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차함, 세대분전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공간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고, 단지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특히, 발전기 DA가 설치되어, 발전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임.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됨.(주택홍보관의 시공자재와는 상이 할 수 있음)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와 발코니 수전, 배수구는 본 공사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및 제조사, 하드웨어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주택홍보관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욕실 출입문은 본 공사시 PVC 계통 도어로 시공됨.
- 무인택배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선택사항 공간의 경우 기본 제공품이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없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본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며, 주택홍보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 차이가 있음.
- 주차장등의 배관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하여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 동하부 PIT 높이, 비내력벽의 두께는 변경 될 수 있음.
- 주요 구조체는 정밀 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 및 뒷발코니 가스 계량기 전단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음.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됨.
- 각 세대는 옆세대 에어컨 실외기실로부터 소음, 진동, 열풍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로 인하여 소음발생과 미관을 저해 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함.
- 전 세대 천장고 2,300mm로 시공예정이며, 시공상 허용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각 주거동의 옥상은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며, 공용설비/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해 필요시 개방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주택홍보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는 주택홍보관 자체 소방시설물임.
- 태양이앤씨와 LGU+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등의 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IoT 호환이 되는 스마트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U+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AP)를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와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홍보관이나 광고에 사용된 홈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홍보관 천장에 설치된 냉난방기(EHP)는 주택홍보관용이며, 옵션 선택세대는 냉방전용 제품이 설치 될 예정임.
- 본 공동주택은 “소방법 화재안전기준 중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엘리베이터홀 창호에는 3개층 마다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계단실의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됨.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 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정화조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부지 경계가 변경 될 수 있음.

IX

기타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3항(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시)규정
- 의무사항 적용 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고기밀 상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최저소비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 분	내진능력(MMI 등급)
내진 등급 I	VII - 0.2428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단위:원)	보증기간
제03412019-101-0001100호	₩27,203,400,000-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 분	공지내용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p>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p>【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p>

	<p>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p> <p>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p> <p>※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p>
<p>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p>	<p>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div>
<p>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p>	<p>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p>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명	감 리 금 액(원)	비 고
건축 감리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876,705,500	부가세 포함
정보통신, 소방, 전기	(주)대경기술단	106,7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자금관리 대리사무	시 행 사	시 공 회 사
상 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무양지역주택조합	(주)태왕이앤씨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202-4	대구 동구 장등로 66 (신천동)
등 록 번 호	120-81-69744	229-82-62879	170111-0412495

■ 주택홍보관 위치 : 경북 상주시 무양동 202-4번지

※ 본 주택홍보관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angju-honors.com/>

■ 분양문의 : 054-536-825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주택홍보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